

#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은 중 환\*

정 광 호\*\*

< 목 次 >	
I. 서 론	IV. 분석결과: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정의의 유형과 해석
II.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 결론: 요약 및 정책시사점
III. 연구방법: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요 약>

전관예우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정의나 심층적 인식유형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사례연구나 법적 고찰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나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조생태계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생태계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양하면서도 상충되는 문제인식의 틀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전체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적 인식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설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포된 인식 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은 크게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법조계 전관예우 시장, ⑤도덕우선주의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에서 흔히 고려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주의 이외에도 법조계 전관예우의 합리적 관행에 바탕을 둔 인식과 연고주의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틀을 활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와 법조계 전관예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법조계 전관예우, 공직윤리, Q 방법론, 문제정의】

\* 제 1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zert94@naver.com)

\*\* 교신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kwjung77@gmail.com)

논문접수일(2015.5.31), 수정일(2015.6.25), 게재확정일(2015.6.29)

## I. 서론

본 연구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존재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정의의 틀이 현실적으로 입법과 법 운용에 있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대중은 공공의 문제가 부각되면, 여론이나 일시적 유행에 근거해 해당 문제를 즉흥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Carter, 2013; Conrad, 1997). 이로 인해 다양한 이견(異見)이나 관점을 종합해 문제의 본질이나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런데 즉흥적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려는 이러한 성향은 여론 주도층이나 대중이 일정한 프레임(frame)에 갇혀 사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Carter, 2013; Lakoff, 2002, 2005).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sup>1)</sup>도 이러한 일방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성적 논의와 숙의를 통한 입법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 등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된 입법과정을 보면,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도덕적 판단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도덕 프레임(문제정의)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한편에서는 다양한 비도덕적 프레임이 거의 무시됨으로써 법조계 전관예우에 얽혀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도덕프레임 때문에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다른 관점을 Q 방법론을 활용해 탐색해 봄으로써,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좀 더 총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심층적·주관적 방법론인 Q 방법을 활용해 여론조사 등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던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인식유형을 도출해 봄으로써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재된 심층의 다양한 프레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의 틀을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된 최근 몇몇 입법안들의 인식 틀과도 비교분석해 보고, 나아가 ‘김영란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sup>2)</sup>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란은 새로 부각된 문제는 아니며 오랫동안

- 1)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전(前)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개업 신청에 대한 반려의 이유로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호사의 개업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 2) 사실 전관예우 현상은 비단 사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행정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폐쇄적 임용, 연고주의, 위계문화, 퇴직 관리의 일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법부 전관예우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의 공통점을 지니나, 사법부 전관예우는 재판을 통해 일반국

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다.<sup>3)</sup> 이미 현행법상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가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에 도입되어 있다. 소위 법조계 전관예우방지법이라는 이 조항은 퇴직 직전에 근무했던 연고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1년간 금지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의 악습을 이용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항을 우회하는 편법과 탈법이 드러나고 있어 전관을 예우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전직 대법관들의 재산 내역들을 보면 대법관 임용 종료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전관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그렇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사법부 현직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폐해는 오히려 반론을 주장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법조계 전관예우를 둘러싼 상반된 관점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수준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한 상이한 접근과 판단의 원천이 또한 될 수 있다(Burstein & Bricher, 1997; Burstein et al., 1995). 다른 복잡한 공공문제와 유사하게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도 동일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상충적이고 모순적 관점을 내포할 수 있다. 동일한 개인의 인식지도(cognition map) 속에서도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복잡한 인식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sup>6)</sup> 결국 법조계 전관예

---

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다든 점, 사법부 임용체계의 지속적 변화로 전관예우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이 부각된다는 점, 사법부와 행정부의 전관예우 규제방법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초점을 두어 인식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2013년 6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7%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민형사재판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 ‘민사재판에 영향 없지만,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 ‘재판 절차상 편의만 봐줄 뿐’이라는 응답이 14.8%에 달하였다. 즉, 내부자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응답자 중 90% 이상이 전관예우가 있고, 그 중에서도 민형사재판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절반(47%) 가까웠다. 출처: 조선일보(2014년 4월 3일자);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1162.html](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3/2014040301162.html)]
- 4) “안대희 총리후보는 2013년 변호사 개업 이후 열달 동안 최대 2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입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한겨레신문, 2015.2.13.)”;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가 맡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올려주는 대가로 '도장값' 3000만원, 최소 수입료 1억원이라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조선일보, 2015.3.19.)”
- 5) 실제 법조계 전관예우나 인맥에 의한 판결이 실재하는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몇몇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출처: 아시아경제(2015.3.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1010482262193>)
- 6) 누구든지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동일현상에 대한 다양한 상충적 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 법조계 전관예우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

우리는 동일현상을 두고서도 여러 관점이 한 개인의 인식지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엇보다 이러한 다층적 인식 틀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다층적 현상을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대한 원인과 대안의 마련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학술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Q 방법론<sup>7)</sup>을 활용해 복잡하게 존재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Q 방법론은 가설발견적 논리(Stephenson, 1957; Brown, 1980)라는 점<sup>8)</sup>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추어진 가설을

---

치는 부정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2) 한편으로는 서로를 위해 일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3)개인의 역량이나 친분을 활용해 적극 노력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7) Q 방법론이 본 연구에 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Q 방법론은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유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의견을 담은 Q 진술문에 응답한 P 샘플들을 유사한 의견끼리 묶어져 압축적으로 유형화되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둘째, Q 방법론은 가설 발견적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인식유형을 찾아내기도 한다(Brown, 1980; 김순은, 2007). 즉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묶어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이론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인식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Q 연구방법론 적용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수단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8) Q 방법론의 활용 목적은 현상을 탐구하여 직관적 통찰력을 과학적으로 획득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가설을 생성하고 시험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R 방법론과는 비교된다. 그렇지만 Q 방법론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과학 패러다임과는 차별된다(김홍규, 2008: 78). 특히 연구의 큰 전제를 이루는 연구대상과 인식의 획득방법에 대한 인식론적인 입장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쟁은 주로 설명(explanation)과 이해(understanding), 객관성(objectivity)과 주관성(subjectivity), 자연주의(naturalism)와 인본주의(humanism), 실증주의(empiricism)와 반실증주의(anti-empiricism)으로 대립하며 수세기 동안 논쟁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대립은 19세기 이후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대립으로 첨예화 되었다. 자연주의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연구는 객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를 계량적(quantitative)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반자연주의 내지는 인본주의에 기반 한 현상학, 비판이론, 해석학은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세계를 질적(qualitative)으로 이해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Q 방법론의 창설자인 스티븐슨은 이 방법론을 통해 주관과 객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Q 방법론에서는 개인이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결적(自決的, operant)이고 주관적이지만, 통합체(concourse)이론과 요인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김홍규, 2008: 9).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은 이론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수성, 부패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셋째, 실천적 관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지도의 구성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제도적·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있어 상충되는 인식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제도설계(institution design)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법조계 전관예우의 개념과 문제정의를 둘러싼 다양성과 맥락

법조계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의 관리를 예로써 정중히 대우함”이다. 즉 예의범절을 갖추어 과거의 관리나 전직자(前職者)를 공손히 대접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의미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하는 경우 현직의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전관의 지위를 활용하여 재판에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다양한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는 법조계 내부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동문수학하며 내부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여 온 집단이 공직 근무를 끝내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적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전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종의 폐쇄적 네트워크와 같은 연고주의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법조계의 직업윤리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가 특정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한다. 사법부는 헌법기구로 법에 의해서만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재판결과나 내용에 영향을 주는 법조계 전관예우는 부정한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특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추구 행동의 결과라고 본다. 즉 개인의 이익극대화의 행동의 결과로 법조계 전관예우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판사나 검사로 근무 후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송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입료를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현직 판검사들은 이러한 관행들을 용인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들 또한 변호사를 개업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일종의 그들만의 집단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교환모형이다. 네 번째

관점은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도덕적 관점이다.<sup>9)</sup>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사회적 이슈화<sup>10)</sup>를 기회로 삼아 심각한 부정부패나 범죄행위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측면에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애매한 부분이나 불가피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아 숨겨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sup>11)</sup>

기본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는 사회자본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적연결망이며 폐쇄적 유형의 사회자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관예우도 크게 보면 법조계의 공공 또는 사적 연결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정광호(2010: 그림 1)의 사회자본 다면성 틀을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공적 성격의 유무와 해당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전관예우의 사회자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표 1> 참고). 이 분석들에 따르면 전관예우도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을 가진 다양한 연결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공익적 법조시민단체(유형 I)를 형성할 수도 또는 사적 친목이나 집단이익에만 그치는 법조시민단체(유형 II)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한편 법조 연결망은 아직 한국의 경우 사적 연결망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법조연결망(유형 III)을 가진 법조인단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사적 연결망으로서 집단내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자본(유형 IV)으로서 여기에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소 부정적 요소를 가진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사회자본도 긍정적 관점에서 보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집단내 결사체로서 긍정적 기능을 경우에 따라서는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9) 2015.5.21.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or.kr)의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기사를 검색하면 총 10,77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10)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된 사건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11) 최근 차한성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문제에서도 여론은 변호사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사법문화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표 1> 사회자본으로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특성

		사회자본 지향성	
		공공 연결망	사적 연결망
사회 자본 성과	공익 추구 공적 신뢰	법조 시민단체 (유형 I)	법조계 연결망 (유형 III)
	배제 연고 주의	법조 시민단체 (유형 II)	법조계 전관예우 - 패쇄적 법조계 연결망 (유형 IV) - 법치주의 모델 - 현실주의 모델 - 도덕주의 - 전관예우(전관예우시장-개인역량 모델) - 전관예우(사회문화 현상-연고집단모델)

이상과 같이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관점은 이를 어떻게 문제정의를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 2.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이론: 문제정의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은 부패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부패이론은 부패 정의나 관점에 따라 나뉘며, 이는 그 발생 원인이나 동기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법치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론, 직업윤리나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접근하는 관점, 집단내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이론, 사회문화적 환경 및 특성에서 접근하는 관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쟁점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는 법체계나 제도를 중시한다. 법이나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법조계 전관예우가 형성·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조계 전관예우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은 「변호사법」 제31조 3항 이하에 존재한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법조계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같은 법관 종신제도의 도입이나 일본의 고위법관처럼 보수수준을 대기업의 임원의 2배 수준으로 높게 잡는 방법, 독일이나 영국처럼 전관의 지위를 활용하기 어렵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제

12) 조선일보 2014.4.3.(법조계 전관예우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변호사 90% 법조계 전관예우 여전)

도적으로 금지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에 있는 행동들(예를 들어, 「변호사법」에 1년간 퇴임한 구역에 개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해당 지역에 개업을 해서 전관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도덕주의적 관점은 사회 정의나 개인 도덕에 대한 감수성을 중시한다. 즉,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행위로 개인 또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의식의 향상을 그 처방으로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은 일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부정의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처방은 사법부 공직자 및 변호사들의 높은 도덕의식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이나 제도를 제시한다(신평, 2008; 2013).

셋째, 집단내부이익 추구의 관점은 사법부의 특수한 성격이나 직업 특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이다.<sup>13)</sup> 법조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법조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사법시험이라는 문턱을 통해 법조계 내부의 끈끈한 연결망을 구성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지의 경로,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상부상조의 문화가 법조계 전관예우의 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박동영, 2012).

넷째,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는 인간 사이의 합리적 이익추구 행동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거래관계로 본다. 즉 자기가 법조계 전관예우를 이용했을 때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측정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때 법조계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조계 전관예우를 부패현상의 일종으로 본다면 부패현상을 합리적

13) 이런 점에서 보면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부 구성의 역사적 유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사법과정의 핵심 구성원이라 볼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두 동일한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판사 내지 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두 외부에는 매우 배타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법조계 전관예우는 일종의 특권처럼 받아들여졌고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1-3년 이내에 평생 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는다는 속설이 만연하였다(한인섭, 1999). 이후 사법시험 정원 확대로 법관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로스쿨 체제의 전환으로 배타적 사법 네트워크 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성언(1998)은 법조비리를 교환이론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을 들여와 설명한다. 즉 판검사와 브로커, 변호사와의 교환 관계에 따른 상호이익과, 폐쇄적인 법조계의 환경과 연고주의에 기반한 직업 규범의 반복은 사회적 관계를 법조계 전관예우를 중심으로 고착화 시키는 아비투스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화된 사회관계 속에서 이러한 가치규범을 내재화한 법조계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를 반복 생산한다는 것이다.



으로 이해하면 개인이 합리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부패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Rose-Ackerman, 1999).<sup>14)</sup> 이런 맥락에서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 theory)을 활용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sup>15)</sup>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회전문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한국 법조집단의 경우 고시나 자격증으로 내부구성원이 엄격히 폐쇄되어 있고 내부 규율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폐쇄성<sup>16)</sup>이 큰 집단이 내부의 강력한 비공식 규율(일종의 예우)을 바탕으로 구성원에게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각자의 합리적 동기에 따라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sup>17)</sup> 즉 내부자 간 거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한 지속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부패환경이 조성되고 그러한 환경에 속한 인간들이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연고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와 사법부라는 폐쇄적인 환경은 지연, 학연, 혈연 및 근무 경력에 따라 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은 연고주의적 특성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고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평, 2013).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문화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조계

- 
- 14) 즉 개인이 부패행동을 했을 때의 편익과 적발가능성과 처벌가능성을 측정하여 편익이 더 클 때 부패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 접근법에서는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15) 회전문 이론은 애초에 규제(regulations)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 기존의 베버(M. Weber)식의 합리적 관점에 따르면 규제하는 사람(주로 공직자)은 공공의식과 공적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규제받는 사람은 이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전문 이론은 베버의 관료제 모형과 달리 규제하는 집단이 규제받는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거나 규제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Makkai & Braithwaite, 1992). 결국 회전문 내외(内外)의 인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안의 집단이 밖의 집단을, 밖의 집단이 안의 집단의 상호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 16) 회전문 인사가 있더라도 폐쇄성이 없고 개방성이 커지면 법조계 전관예우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회전문 인사가 실제로 규제포획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Gormley, 1979; Cohen, 1986; Quirk, 1981)를 보면, 실제 회전문 인사가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사교류의 개방성이 큰 규제위원회(US FCC, FTC, CAB, FDA and NHTSA)의 경우, 외부의 견제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의 효과는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이다.
- 17)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같이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이라는 관문을 통해 유사한 영역에서 일하는 집단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판사와 검사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직을 떠나게 되면 앞선 많은 선배들과 같이 변호사의 집단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법조계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 질서는 나아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자신에게도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 행동이 지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전관예우 현상에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연고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사법부 채용시스템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직업윤리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처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3.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국내연구는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성언, 1998; 송인호, 2011; 신평, 2013; 이국운, 2011; 한인섭, 1999). 법조계 전관예우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기관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비판한다. 신평(2013)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폐해가 헌법 파괴를 초래함을 지적한다.<sup>18)</sup> 그렇지만 아직은 몇몇 소수 연구를 제외하고는(류준혁, 2010; 이지은·홍석민, 2014), 법조계 전관예우가 실제로 재판결과에 어떤 결과를 끼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지은과 홍석민(2012)은 변호인과 판사 간 관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판결의 공정성 여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법조계 전관예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9)</sup>

미국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은 법조문, 판례와 같은 법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학자들의 전통적 접근에도 불구하고(Ebbesen and Konecni, 1982), 법 이외의 요소들이 법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가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sup>20)</sup>되어 왔다.

18) 첫째,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즉 만인 앞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연고에 근거한 왜곡된 법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법조계 전관예우는 국가권력과 사적 이익을 유착시키고 나아가 구조화 되어 국가와 시민, 시장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무너뜨려 헌법체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신평, 2013). 김주영(2002)은 법조계 전관예우의 폐단으로 첫째, 사법적 판단에서의 공정성 저해,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정의 왜곡, 둘째,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조장 및 이로 인한 무익한 법률분쟁의 증가, 셋째, 법률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왜곡, 넷째, 전관변호사에 의한 독과점시장의 형성으로 부당한 고액수입료 문제의 발생, 다섯째, 판검사의 조기사직으로 인한 법원, 검찰의 형해화를 지적한 바 있다.

19) 그들은 2008-2010년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판사와 변호인의 관계는 ①변호인이 전관인지(전직 판사인지), ②변호인이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인지, ③변호인이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지 여부로 구체화하였고, 판결 내용은 ①유무죄, ②형량, ③구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교차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 변호인과 판사간의 인적 관련성이 재판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 영역은 판사의 재량이 비교적 많이 인정되는 유·무죄 판단, 특히 사실 판단과 구속여부 판단의 영역이고, 그 대상은 호의적 판결 통해 형성된 관습으로부터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직 판사였다.

<표 2> 국내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주요연구

연구방법	연구자	문제점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
법률적·제도적 접근	송인호 (2013)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기존의 대책은 우회적, 간접적임.	변호사 개업 직접 제한,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 확대, 변호사단체를 통한 견제 제도 기반 마련.
	신평 (2013)	연고주의로 인한 법조계 전관예우의 만연해 있어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함	사법의 민주화 내지는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판검사 징계제도 강화, 법조윤리협의회 권한 강화.
	이국운 (2011)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	법관의 신분보장,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법관 인사제도 개혁,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와 희생이 중요
	한인섭 (1999)	법조 조직의 관료적, 권위적 성격, 내부로부터의 개혁의 실패	암묵적 묵인되어온 비리 철폐의지 필요, 외부적 감시체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설문조사 + 법률적·제도적 접근	김성언 (1998)	법조비리는 법조시장이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함과 법조사회의 아비투스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구조적 문화적 산물임	법조일원화를 통한 청탁압력으로부터 자유, 비리법조인에 대한 처벌강화, 시민감시활동 강화, 법관재량범위 축소
실증연구	이지은 & 홍석민 (2014)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함	변호인과 판사간의 인적 관련성이 재판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줌. 판사의 재량이 비교적 많이 인정되는 유·무죄 판단, 특히 사실 판단과 구속여부 판단의 영역,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판사의 재량이 큰 영역에서 전관 영향이 큼
	류준혁 (2010)	실증연구 부족,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부족	사실 변호인의 고용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단, 표본이 150개에 불과)

이제까지의 선행논의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의, 이론적 쟁점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 및 생각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에서부터 결과, 그리고 대응방향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흩어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여론조사나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공론화 논의에서 제대로 부각되어 고려되지

20) 판사의 판결은 많은 영미권 법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 온 주제이다(Gibson, 2008). 판사, 피고인, 피해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주로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특히 흑인남성은 백인에 비해 더 높은 형량을 받고(Daly, 1987), 젊은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Steffensmeier, Kramer & Ulmer, 1995)고 보고하고 있다. 실업자들의 경우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음에 비해(Chiricos & Bales, 2006), 가족이 있는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낮다(Daly, 1987). Smith(1991)는 학력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보다 높은 형량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Baldus, Woodworth와 Pulaski(1990)는 백인을 죽인 피고인이 흑인을 죽인 피고인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4.3배에 이른다는 연구 또한 판결이 단순히 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미국 사회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심층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문제정의의 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찾기도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범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들을 Q 연구방법론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Q 방법론 과정을 아래의 연구방법론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1. 범조계 전관예우 현상과 Q 방법론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유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연구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은 일반적 사람들의 속성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반대로 주관적 속성들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상관을 찾는 방법론이다. 즉, 전자는 요인분석(R 방법)이라 일컫는다면 후자를 Q 방법이라 부른다. Q 방법론의 연구절차는 크게 Q 진술문의 구성, P 샘플의 선정, Q 분석으로 구성된다.<sup>21)</sup> 특히 여기서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고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주관

21) 첫째, Q 진술문은 ‘의견(opinion)’, 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진술로 구성된다. Q 방법론의 페러다임에서 바라보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의 의식을 투영하는 한 편재적(ubiquitous)이며 구조와 기능에 있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주관적 의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합체(concourse)는 Q 방법론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주관적 형태를 강조한다. 스티븐슨(1953a)는 의사전달의 주관적 형태 안에서 모든 메시지, 개념(concept), 관념, 아이디어, 제스처, 대상에 관한 통합체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Q 방법론의 분석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 진술문 내용의 출처는 인터뷰,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 개인의 진술과 학술연구에 근거한 주장과 언론매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설계된 문항이다(Brown, 1980; 김순은, 2007). 둘째, P 샘플의 선정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P 샘플을 대상으로 Q 분류를 시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설문에 있어 개인이 지닌 Q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정된 P 샘플은 Q 분류를 할 때 Q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서열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07; 김홍규, 2008). 이때 P 샘플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집단과 개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Q 방법론의 요체는 다양한 생각들을 유사한 인식유형끼리 묶어 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Q 분석은 위와 같이 수집된 응답값을 토대로 분석한다. 분석은 P 표본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 요인분석을 통해 응답자들 간의 응답값의 유사성을 토대로 인식유형이 분류되는 것이다. Q 진술문들의 선호와 비선호로 구분 구조화 되어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데, 가우스(Gauss)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를 형성한다(Stephenson, 1980a). Q 방법론은 이 통합체를 유형화 하여 프레임의 유형을 밝혀준다는 데 일단의 그 의의가 있다.

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법조계 전관예우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현상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김순은, 2007; 김흥규, 2008).

## 2. Q 진술문의 구성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제한된 관점을 지닌다. 그리고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관점은 부패 정의 및 이론적 쟁점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패 정의는 공적영역의 권한과 위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부패 정의는 다의적이며, 공공적, 공익적, 시장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Heidenheimer, 1978). 즉, 법조계 전관예우의 현상 또한 사법이라는 공적 권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부패 정의의 맥락을 지니며, 법조계 전관예우를 인식하는 관점 또한 부패의 다양한 관점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부패이론에 기반한 진술문 14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선행연구에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관점과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개의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들을 망라하였으며, 중복되는 의미를 지닌 진술문들을 줄였다. 망라하는데 있어 부패연구의 커다란 흐름인 Ackerman 해석방식의 합리적 시장적 접근법을 기준으로 문화적 접근법, 제도적, 도덕적 접근법으로 각각 구별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에서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연고주의의 문제와 ‘김영란법’ 이슈를 진술문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른 진술문은 <표 3>과 같다.

<표8> 선행연구에 기반 한 진술문

번호	선행연구에 기반 한 진술문	인식특성
1	부패의 적발가능성이 없다면 대부분 부패한 행동을 할 것이다.	계산적 합리성
2	도덕적 의식개혁보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패발생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제도적 규율
3	부패행동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도덕성 부족
4	부패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약한 처벌 계산적 합리성
5	우리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지상주의
6	나에게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약한 처벌 계산적 합리성

7	김영란법은 부패 억제효과보다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뿌리 깊은 사회문화현상
8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언론, 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내부 폐쇄적 집단이익문화
9	인간은 경제적 동기보다 도덕적 동기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한다.	도덕성 결핍
10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사회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실타협주의
11	복제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남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도덕-정직성
12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행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연고주의
13	부정행위는 사람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공정신뢰 공동체
14	거짓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정직성

다음으로 나머지 20개의 진술문들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의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진술문들은 신문기사에 이슈화된 것부터 일반시민 및 법률관계자 인터뷰와 로펌(law firm)의 보고서로부터 추출되었으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단순한 의견에서부터 해당 분야의 애매모호한 부정행위들에 대한 진술문들로 구성하였다. 애매모호한 진술문들은 이에 대해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전관예우 세부주제별 진술문

진술문 번호	법조계 전관예우
15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심각한 부패현상이다.
16	사법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등)이 일반 변호사보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17	전관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용이 비싼 것이다.
18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
19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들이 서로 자기식구를 챙기기를 통해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0	우리사회의 만연한 소집단주의(학연, 혈연, 지연 등)는 전관예우 현상을 만연하게 했다.
21	전관예우는 의뢰인이 지닌 승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다.
22	재판관들에게 과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23	공직 세계에 만연한 준법의식 부재는 전관예우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24	전관인 변호사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업하

	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5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는 전관예우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6	퇴직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은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27	전관들은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인의 역량이지 부정관행이 아니다.
28	개인적 인연을 이용하여 증거 조사나 증인 신청과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행동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29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0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보다는 주먹에 호소하려 할 것이다.
31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사건의 담당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마침 친분이 두터운 판사가 새로 오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32	전관예우는 변호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될 게 없다.
33	전관예우를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부패행위이지만, 형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은 괜찮다.
34	전관예우를 이용해 불구속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 3. P 샘플의 선정

본 연구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심층적 응답자인 P 샘플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생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패의 경우 내부자의 경우에는 부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식이, 외부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인식이 지배적인 성향이 있다. 또한 부정행위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직접 현금으로 돈을 수수한다든지, 교환관계의 시간이 가까운 경우, 도덕적 부담감을 직접적으로 느낀다든지 할수록 부패행위라고 인식할 성향이 더 높을 것이다(Peters & Welch, 1978). 이런 점에서 P 샘플을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을 최대한 균등히 선정하려 하였다. 나아가 직업을 선정함에 있어 내부자와 외부자가 구별될 수 있도록 P 샘플을 선정하였다. 큰 분류로 보면 P 샘플은 공공분야 종사자, 민간분야 종사자, 학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법조계 전관예우의 경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내부 종사자, 그리고 공공분야 종사자, 민간 기업체나 회사원, 교수, 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4. Q 분석의 활용과정

Q 분석을 위해 선정된 P 샘플 대상에게 Q 진술문을 주고 동의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 사전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관련된 기사들을 최대한 상반되는 입장들을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다. 그에 따라 P 샘플 응답자들은 총 34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총 9개의 단계에 걸쳐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였다.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의 순서에 따라 개수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4의 경우는 2개, +3의 경우에는 3개, +2의 경우 4개, +1의 경우에는 5개, 0의 경우에는 6개, -1의 경우에는 5개, -2의 경우에는 4개, -3의 경우에는 3개, -4의 경우에는 2개로 구성하여 진술문의 서열이 정규분포의 형태를 이루도록 하였다. 테마별로 결과를 취합하여 PQ Method<sup>22)</sup>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가를 기준으로 인식유형별 개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전관예우에 관한 문제정의의 유형과 해석

#### 1. Q 방법론 분석 결과

본 연구의 Q 방법론에 근거한 심층적 요인분석을 위해 21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과 4월동안 Q 설문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 응답오류와 불일치가 큰 1명 응답자를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Q 분류표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5개의 인식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 설명력은 총 70%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은 총 9명이 속하였으며,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대학원생, 국회보좌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다. 제 2유형은 총 3명이 속하였으며, 대학원생, 공무원, 변호사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각 1명씩 속하였다. 제 3 유형은 2명이 해당되었으며, 판사 및 변호사가 각각 1명씩 속하였다. 제 4유형은 2명이 속하였으며, 여기에는 교수와 대학원생 각 1명씩 해당하였다. 그리고 제 5유형은 2명이 속하였으며 변호사와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있었다.

22) 포털사이트에서 PQ Method를 검색하면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5>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Q 설문 요인분석표

P 샘플			요인				
성별	나이	직업	1	2	3	4	5
남	42	판사	0.6737*	-0.0282	0.3058	-0.4347	-0.0404
여	26	대학원생	-0.0819	0.1217	-0.0301	0.8478*	-0.0651
여	40	변호사	-0.1826	0.2645	0.8290*	0.0643	0.0292
여	29	대학원생	0.8263*	0.0748	0.2177	0.0824	-0.1956
남	43	변호사	0.6832*	0.2262	0.0603	0.0332	0.2905
여	33	공무원	0.6689*	0.2462	0.1150	0.4000	0.2943
남	36	회사원	0.7416*	0.0859	-0.0208	-0.0545	0.1396
남	28	대학원생	0.3615	0.7656*	-0.0576	0.0879	0.0487
남	33	공무원	0.1743	0.8562*	0.1082	0.0766	-0.0404
남	37	변호사	-0.0176	0.8672*	0.1974	-0.1216	0.1753
남	34	국회보좌관	0.7897*	0.2226	-0.1996	0.2758	-0.0106
남	47	판사	0.4460	-0.0986	0.5811*	-0.1415	0.2368
여	29	대학원생	0.7501*	-0.0037	0.0564	-0.0254	0.2029
남	52	교수	0.3045	-0.2916	0.2141	0.5217*	0.0604
남	39	검사	0.6177*	0.1621	0.5118	0.0591	0.2286
남	61	변호사	0.0051	0.1078	0.0745	-0.1259	0.8864*
여	57	공무원	0.6080*	0.0930	0.4259	-0.3294	0.2040
남	62	공무원	0.4544	0.1802	0.3575	0.2345	0.1266
여	53	공무원	0.4303	0.0634	0.1998	0.1309	0.6104*
여	28	회사원	0.3921	-0.1238	0.4483	0.2522	0.4396
설명된 분산(% , 총 70%)			28	13	11	9	9

한편 각 유형간 상관관계는 <표 6>과 같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유형 2>와 <유형 3> 간의 값으로 0.263이고, 나머지 상관관계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유형 간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는 어렵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각 유형간 상관관계가 낮아 각각의 유형이 그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표 6> 유형 간 상관관계

유형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1.000	0.302	0.197	0.053	0.244
2		1.000	0.263	0.006	0.189
3			1.000	0.118	0.231
4				1.000	-0.067
5					1.000

다음으로, 진술문별 요인에 따른 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은 진술문 마다 해당 인식유형은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동의를, 낮을수록 강한 반대를 나타낸다. 또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구별되는 문장들을 신뢰도 수준에 맞게 표시하였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내용은 모든 인식유형에서 유사하게 응답한 값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응답값의 경우에는 진술문 5, 21, 22가 이에 해당한다. 합의된 문장을 살펴보면 진술문 21, 22의 경우에는 조금은 동의하는 수준에서 모든 유형의 응답값이 유사하다. 즉, 법조계 전관예우가 부정행위이든 아니든 간에 재판관의 과도한 재량에 대한 우려와 의뢰인들의 지나친 기대가 법조계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 7> 전관예우 진술문에 따른 요인값

번호	진술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1	2	3	4	5
Q1	부패행동의 적발가능성이 없다면 대부분 부패를 할 것이다.	1	3	2	2	-2
Q2	도덕적 의식개혁보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패발생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0	2	3	-2	-2
Q3	부패행동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	-4	1	2	3
Q4	부패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2	1	2	-4	0
Q5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0	1	-1	0	2
Q6	나에게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1	-4	-4	1	-4
Q7	김영란법은 부패 억제효과보다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1	-1	-4	2	0
Q8	조직 내부 문제를 외부(언론, 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2	1	-1	-1	-2
Q9	인간은 경제 동기보다 도덕 동기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3	0	0	-2	3
Q10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사회에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0	-3	1	-4
Q11	복제품의 구매 및 제조는 남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0	2	-2	-3	2
Q12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행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0	3	-3	1	-1
Q13	부정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2	4	1	0	4
Q14	거짓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한다.	-1	-3	-2	-4	-1
Q15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심각한 부패현상이다.	2	-1	-2	0	1
Q16	사법부 고위직(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출신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보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다.	-2	0	1	-1	2
Q17	전관이 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용이 비싼 것이다.	3	0	1	4	3
Q18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	-3	-2	-3	-3	-1
Q19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들이 서로 자기식구를 챙기기를 통해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	2	4	1	0
Q20	만연한 소집단주의(학연혈연지연)가 전관예우를 초래했다.	3	-1	2	3	0
Q21	전관예우는 의뢰인이 지닌 승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다.	1	1	3	2	-3
Q22	재판관의 과도한 재량 때문에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1	2	0	2	1

Q23	공직에 만연한 준법외식 부재는 전관예우의 주요 원인이다.	1	0	-1	-3	-2
Q24	전관변호사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0	-1	1	-2	4
Q25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는 전관예우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	3	0	0	2
Q26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은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0	-3	-1	0	0
Q27	전관들의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인의 역량이지 부정행위가 아니다.	-3	-1	3	0	-1
Q28	개인인연을 이용해 증거조사나 증인 신청·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 편의를 주는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4	4	1	-2	1
Q29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3	-1	-1	-1
Q30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보다는 주먹에 호소하려 할 것이다.	1	-2	0	-1	-3
Q31	담당판사의 인사이동으로, 마침 친분이 두터운 판사가 새로 오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2	0	0	4	0
Q32	전관예우는 변호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될 게 없다.	-4	1	0	3	-3
Q33	전관예우를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부패행위이지만, 형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은 괜찮다.	-4	-2	4	1	1
Q34	전관예우를 이용해 불구속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4	-2	-2	-2	1

Notes: 음영이 들어간 글씨는 합의 진술문; 척도=-4(매우 반대)~+4(매우 찬성)

## 2. Q 방법론에서 도출된 문제정의 유형

### 1) 요인1 : 법치주의 모형

본 인식유형은 법치주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 가운데 사소한 편의를 봐주거나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까지도 심각한 부정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에 엄격하며, 법조계 전관예우에 의한 판결에 영향을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심각한 부정부패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진술문 28, 17).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의 방조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한다(진술문 29). 또한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법의 효과는 미약하며, 실제로 전관이 재판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아직도 끼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게 된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연고주의 내지는 소집단주의를 지적하고 있다(진술문 20). 종합적으로 보자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인식하는 유형이다.

<표 8-1> 요인1 : 법치주의 모형의 주요 특성

진술문	번호	요인배열				
		1	2	3	4	5
개인적 인연을 이용하여 증거 조사나 증인 신청과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행동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28	4	4	1	-2	1
전관예우를 이용해 불구속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34	4	-2	-2	-2	1
전관이 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용이 비싼 것이다.	17	3	0	1	4	3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9	3	-3	-1	-1	-1
우리사회의 만연한 소집단주의(학연, 혈연, 지연 등)은 전관예우 현상을 만연하게 하였다.	20	3	-1	2	3	0
인간은 경제적 동기보다 도덕적 동기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한다.	9	-3	0	0	-2	3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	18	-3	-2	-3	-3	-1
전관들은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인의 역량이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27	-3	-1	3	0	-1
전관예우는 변호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될 게 없다.	32	-4	1	0	3	-3
전관예우를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부패행위이지만, 형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은 괜찮다.	33	-4	-2	4	1	1

주: 9점 척도 =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2) 요인2: 현실주의 모형

본 인식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이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해친다고 생각하나(진술문 28, 13), 현실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사소한 부정행위는 가능하며, 적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나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 현실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진술문 12, 1). 또한 법조계 전관예우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조계 전관예우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진술문 29). 이런 점에서 거짓말이나 부패행동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진술문 14, 3). 즉 이 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적발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2> 요인2: 현실주의 모형의 주요 특성

진술문	번호	요인배열				
		1	2	3	4	5
개인적 인연을 이용하여 증거 조사나 증인 신청과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행동은 심각한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28	4	4	1	-2	1
부정행위는 사람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13	2	4	1	0	4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는 전관예우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5	2	3	0	0	2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은 부정행위는 이해할 수 있다.	12	0	3	-3	1	-1
부패행동의 적발가능성이 없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패행동을 할 것이다.	1	1	3	2	2	-2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9	3	-3	-1	-1	-1
거짓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한다.	14	-1	-3	-2	-4	-1
퇴직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은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26	0	-3	-1	0	0
부패행동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발생 한 것이다.	3	-1	-4	1	2	3
나에게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6	-1	-4	-4	1	-4

주: 9점 척도=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 3) 요인3 : 사회적 연고주의 모형

3번째 인식유형은 사회적 연고주의 모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인식유형은 다른 인식유형에 비해 대조적인 것은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진술문 27), 전관예우 현상을 공직자들의 자기식구 챙기기로 본다는 점이다(진술문 19). 이러한 점에서 집단 내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고주의 관점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 유형에 해당하는 P 샘플은 2명 모두 법조계 종사자이다.

이 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가 전관예우 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진술문 18). 전관들은 인맥을 이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형량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관들의 인맥을 활용한 이익추구 행동은 비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진술문 27), 의뢰인들이 지닌 지나친 기대 때문에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이 더 과장된다고 생각한다(진술문 21). 또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은 공직자들 사이에 자기식구 챙기기를 통한 집단 이익 추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9). 결국, 이 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연고주의로 연결된 집단적 이익추구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이 인식유형은 4유형과는 달리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거래적 관계에 따른 상호이익 추구로 보기 보다는 사법부라는 집단의 자기이익 챙기기의 결과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표 8-3> 요인3: 사회적 연고주의 모형의 주요 특성

진술문	번호	요인배열				
		1	2	3	4	5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들이 서로 자기식구를 챙기기를 통해 집단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9	2	2	4	1	0
전관예우를 이용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부패행위이지만, 형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은 괜찮다.	33	-4	-2	4	1	1
도덕적 의식개혁보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패발생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2	0	2	3	-2	-2
전관들은 '인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개인의 역량이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27	-3	-1	3	0	-1
전관예우는 의뢰인이 지닌 승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다.	21	1	1	3	2	-3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사회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10	-1	0	-3	1	-4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심각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행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12	0	3	-3	1	-1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	18	-3	-2	-3	-3	-1
나에게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6	-1	-4	-4	1	-4
김영란법은 부패 억제 효과 보다 사회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7	-1	-1	-4	2	0

주: 9점 척도 =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4) 요인4 : 전관시장 모형

<표 8-4> 전관시장 모형의 주요 특성

진술문	번호	요인배열				
		1	2	3	4	5
전관이 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비용이 비싼 것이다.	17	3	0	1	4	3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사건의 담당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마침 친분이 두터운 판사가 새로 오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31	-2	0	0	4	0
전관예우는 변호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될 게 없다.	32	-4	1	0	3	-3
우리사회의 만연한 소집단주의(학연, 혈연, 지연 등)은 전관예우 현상을 만연하게 하였다.	20	3	-1	2	3	0
부패행동의 적발가능성이 없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패행동을 할 것이다.	1	1	3	2	2	-2
공직 세계에 만연한 준법의식 부재는 전관예우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23	1	0	-1	-3	-2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	18	-3	-2	-3	-3	-1
정품이 아닌 복제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남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11	0	2	-2	-3	2
거짓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한다.	14	-1	-3	-2	-4	-1
부패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	4	-2	1	2	-4	0

주: 9점 척도 =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본 인식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현실에 주어진 교환관계(거래적 관계)로 이해한다. 이 유형 또한 2유형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진술문 17). 이 유형에서의 전관예우는 전관들이 가진 인맥을 이용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한 의뢰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소에 대한 욕구가 전관예우 현상을 구성하여 가능하게 하고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유형이다(진술문 31, 1). 즉, 전관이 가진 현실적 힘을 이용하려는 소송의뢰인과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간의 거래적 관계로 전관예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진술문 32). 이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거래적 관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유형에서는 기존의 변호사법에 규정된 전관예우 방지법은 효과가 없지만 거래적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수준이 높은 ‘김영란법’이 전관예우 및 부패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진술문 18, 4, 7).

5) 요인5 : 도덕주의 모형

이 유형은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도덕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부패를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진술문 3),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도덕 감정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진술문 9).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인 부정행위는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진술문 13). 이런 전제하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취업하는 공직자의 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전관예우는 시장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문제라 인식하는 유형이다(진술문 24, 17).

<표 8-5> 도덕주의 모형의 주요 특성

진술문	번호	요인배열				
		1	2	3	4	5
부정행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13	2	4	1	0	4
전관인 변호사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4	0	-1	1	-2	4
부패행동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발생 한 것이다.	3	-1	-4	1	2	3
인간은 경제적 동기보다 도덕적 동기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한다.	9	-3	0	0	-2	3
전관이 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입비용이 비싼 것이다.	17	3	0	1	4	3
전관예우는 의뢰인이 지닌 승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다.	21	1	1	3	2	-3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보다는 주먹에 호소하려 할 것이다.	30	1	-2	0	-1	-3
전관예우는 변호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될 게 없다.	32	-4	1	0	3	-3
적당한 거짓말은 우리사회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10	-1	0	-3	1	-4
나에게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6	-1	-4	-4	1	-4

주: 9점 척도 =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 3.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최근 입법안의 분석: 문제정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인식유형은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다른 생각과 대처방안을 생성한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입법안은 법과 제도를 통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적 관점을 공유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거나 통과된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법안의 내용과 관점 등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표 9> 참고).

<표 9>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 입법과 인식유형

입법명	대표발의 의원	주요 내용	인식유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방지법, 계류중)	서기호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와 관련 담당하는 변호사와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접촉하는 경우 면담내용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li> <li>-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2명 이상의 법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li> <li>-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법원 이외 사건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함</li> </ul>	법치주의, 사회적 연고주의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류중)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로펌 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함. 다만 공익활동의 사무는 가능.</li> <li>-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위해 현직 보수의 90%를 지급하자는 내용.</li> </ul>	법치주의, 전관시장모형, 도덕우선주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2014.12.9.)	안전행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li> </ul>	법치주의, 현실주의

첫째, 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연고주의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연고주의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적연결망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적 공간에서 만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김동철 의원의 입법안은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적절한 수입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전관예우를 통한 경제적 동기를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의 입법이다. 즉, 김의원의 입법안은 전관예우 현상의 원인으로 퇴임 후 최고위 법원 공무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 활용 동기의 감소를 유도한다. 또한 퇴임 후 도덕적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우리사회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도덕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입법안은 법치주의, 전관시장모형, 도덕우선주의 모형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4년 12월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다른 고위공직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한 취업심사를 받게 변경하였다. 이는 과거의 변호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법으로 제한하고 현실적 정치상황 및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식의 생각들이 반영된 입법안들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예상컨대 제한된 범위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즉 논의한 입법안들은 다양한 인식의 갈래들을 포괄 할 수 있는 입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관점에 입각한 처방은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경우 다른 형태(예: 풍선효과, balloon effect)로 변형되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국 Q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유형 분석은 전관예우 현상을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적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 기저에 잠재된 다양한 인식유형들을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내지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와 김영란법

여기서는 본 연구분석에서 도출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의 유형을 ‘김영란법’ 현실성과 연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구성된 진술문 7번(김영란법은 부패 억제효과보다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유형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관적 의견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각각의 인식유형이 지니는 ‘김영란법’에 대한 다른 생각은 법 시행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해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23)</sup>.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석이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다만 본 분석을 통해 어떤 인식유형을 지니느냐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표 10>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인식유형 종합(Q 방법론 요인값 결과치)

핵심 쟁점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법치주의	현실주의	사회적 연고주의	전관예우시장 모형	도덕우선주의
김영란법과 사회적 현실 (사회혼란을 초래한다)	-1	-1	-4	+2	0

주: 9점 척도 = -4(매우 반대) ~ +4(매우 찬성)

본 연구에서 나온 5개의 상이한 인식 틀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표 10>과 같다. 법치주의 모형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1점). 이는 법에 의한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 특별히 ‘김영란법’ 제정과 적용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도 ‘김영란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와 동일하게 다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김영란법’의 시행이 새로운 현실이 됨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조계 전관예우가 깊숙이 내재된 사회적 연결고리에 근거해 작동된다는 사회적 연고주의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전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고주의가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것을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김영란법’이 정확하게 전관이 발생하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패억제 효과가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관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아닌 상호이득에 의한 시장원리(market principle)로 보는 전관시장모델의 경우 ‘김영란법’이 지금처럼 작동되는 법조계 전관예우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 예상한다. 인간의 도덕성을 주로 강조하고 우선시하는 도덕주의 모형은 도덕감정에 의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조계 전관예우에 관한 Q 방법에 의한 인식유형 분류는 ‘김영란법’이라는 이슈에 대한 유형별 인식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제도의 제정과 효과 및 파급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V. 결론: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 요약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층적 인식지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Q 방법론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전관예우 시장, ⑤도덕 우선주의와 같은 다섯 가지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면, 도덕과 법치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본 연구의 Q 방법론의 분석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프레임 이외에도 추가로 3가지의 프레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도덕적 프레임으로 위에서 언급한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전관예우 시장이라는 3가지 프레임이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왜 이러한 프레임이 존재하고 어떻게 전관예우를 둘러싼 입법과정과 정책운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했듯이, 최근 전관예우 관련 3가지 입법안에서도 하나의 일방적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이 입법안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기호 정의당 입법안: 법치주의, 사회적 연고주의; 김동철 입법안: 법치주의, 전관예우시장, 도덕우선주의; 201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치주의, 현실주의).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올해 전격적으로 통과된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와 그 적용의 현실가능성도 탐색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현실주의, 사회적 연고주의, 전관시장 모형 등 추가로 Q 방법론을 통해 나온 프레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기존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인데, 겉으로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인식의 이면에는 법조계 전관예우가 가진 기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조계 전관예우 시장모델의 경우 ‘김영란법’의 시행은 사회적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효과적인 법운동에 대한 지혜가 요청된다.

## 2. 정책시사점

지금까지 언급한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정의, 원인과 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문제정의 속에는 논리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인식지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와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이 제안될 수 있다. 이를 각각의 관점에서 적합한 정책수단과 연계해서 표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에서 보듯이,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를 법치의 결핍이나 흠결로 본다면(원인), 강력한 입법(처방)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김영란법’과 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규제 및 처벌 입법(정책수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조계 전관예우의 문제를 전관이라는 법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합리적

거래모형으로 본다면, 적정 수입료 규제나 아니면 공정한 법조시장의 환경 개선과 같은 입법안이 정책수단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 전관예우를 폐쇄된 사회적 연구주의와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투명성과 법조 인사개방(회전문 인사의 파괴)과 같은 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책수단을 고려함에 있어서 특정한 하나의 인식유형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양한 인식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현상을 하나의 특정한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포괄 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입법을 통하되,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제도-국민배심원 제도 등을 크게 확대하여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조계 전관예우의 비용(cost)을 극적으로 확대-법조계 전관예우 처벌 조항의 극적 강화-하여 시장 교환 모형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사법부 법조계 전관예우의 폐쇄적 연결망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법조인 인력양성 방안 등을 제도화 하여 국민들의 지지확보와 더불어 효과적인 제도실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 법조계 전관예우 프레임: 문제정의와 처방·수단의 인과모형

문제정의 (프레임)	원인	처방	정책수단 사례
• 법치주의 : 법치 문제	법규 흠결	법·제도 개선	개혁입법(김영란법)
• 도덕우선주의: 도덕의 문제	도덕성 결핍	도덕성 회복	법조 윤리현장 제정·준수
• 사회적 연구주의: 특수 이익 (폐쇄적 법조 네트워크)	폐쇄적 연결망	폐쇄적 법조계 연결망 해체-파괴	연고지 개업 및 사건 수입불허 투명성 제고
• 전관시장 모형: 합리적 거래-이익 교환 모형	상호이익 발생·합리적 교환	적정·공정 수입료의 설계도입	수입료 규제 불공정수입료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
• 현실주의: 사회문화 현상 (전임자 배려)	법치도덕보다 전임자 예우 우선	법조계 생태계의 사회문화 개선	윤리현장 제정 및 자정 캠페인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20명의 P 샘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조계 안팎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Q 분류표를 받았으나, 20명에 포함되지 못한 언론인, 저학력 계층 및 법원사무 공무원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직업유형 등에서 잠재된 새로운 인식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보다 다양하고 많은 P 샘플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

후 행정부 및 타 직종에서 나타나는 전관예우 현상과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Q 방법론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향후 연구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법조계 전관예우의 경우 법치주의나 도덕주의 프레임에만 매몰된다면 다른 다양한 프레임의 존재를 간과할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단순한 접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 법이나 그 밖의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된 입법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도 다양한 중첩된 법조계 전관예우의 프레임에 대한 종합적 성찰이 필요하다.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 후 나타날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도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본 연구의 문제정의의 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조계 전관예우가 일종의 회전문 현상과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속적인 법조 시장의 개방,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법조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이 어떤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법조계의 여러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언. (1998).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98-09). 형사정책연구원.
- 김순은. (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김주영. (2002). 「전관예우의 발생구조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향」. 인문과학 제9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홍규. (2008). 「Q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덴 애리얼리. 이정식(옮김). (2012).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서울: 청림출판.
- 류준혁. (2010).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 분석: 차별적 요인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7(2): 89-110.
- 박동영. (2013). 「법조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송인호. (2013).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4(2): 413-437.
- 신 평. (2008).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법학논고」. 28: 1-40.
- \_\_\_\_\_. (2013). 전관예우의 근절책. 「법학논고」. 43: 1-28.

- 이국운. (2009).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법학」. 11(1): 119-145.
- 이지은·홍석민. (2012).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정책」. 26(3):137-164.
- 정광호.(2010).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과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4): 333 ~ 374.
- 한인섭. (1999). 범조비리: 문제와 대안. 「법학」. 39(1): 164-188.
- Baldus, D. C., Woodworth, C., & Pulaski, C. A. (1990). *Equal Justice and the Death Penalty: A Legal and Empirical Analysis*.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Burstein, P., & Bricher, M. (1997). Problem Definition and Public Policy: Congressional Committees Confront Work, Family, and Gender, 1945-1990. *Social Forces*, 76: 135-68.
- Burstein, P., Bricher, R. M., & Einwohner, R. L. (1995).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al Change: Work, Family, and Gender on the Congressional Agenda, 1945-19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67-83.
- Carter, M. J. (2013). The Hermeneutics of Frames and Framing. An Examination of the Media's Construction of Reality. *SAGE Open*, 3(2):1-12.
- Conrad, P. (1997). Public eyes and private genes: Historical frames, news constructions, and social problems. *Social Problems*, 44: 139-154.
- Che, Y. (1995). Revolving Doors and the Optimal Tolerance for Agency Collus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6(3): 378-397.
- Chiricos, T. G., & Bales, W. D. (2006). Unemployment and Punishment: An Empirical Assessment. *Criminology*, 29(4): 701-724.
- Cohen, J. E. (1986). The Dynamics of the "Revolving Door" on the FC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4): 689-708.
- Dal Bo, E. (2006). Regulatory Capture: A Review,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2): 203-225.
- Daly, K. (1987). Structure and Practice of Familial-based Justice in a Criminal Court. *Law and Society Review*, 21: 267-290.
- Ebbesen, E. B., & Konecni, V. J. (1982). Social Psychology and the Law: A Decision-Making Approach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V.J. Konecni and E.B. Ebbesen (e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San Francisco: H. W. Freeman.
- Gibson, J. L. (2008). Challenges to the Impartiality of State Supreme Courts: Legitimacy Theory and 'New-Style' Judicial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 59-75.
- Gormley, W. T. (1979). A Test of the Revolving Door Hypothesis at the FCC.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4):665-683.

- Lakoff, G. P. (2005). A Cognitive Scientist Looks at Daube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S1): S114-S120.
- Makkai, T., & Braithwaite, J. (1992). In and Out of the Revolving Door: Making Sense of Regulatory Capt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1): 61-78.
- Peters, J. G., & Welch, S. (1978). Politics, Corruption, and Political Culture A View from the State Legislatur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6(3): 345-356.
- Quirk, P. (1981). *Industry influence in federal regulatory agen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Ackerman, S.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ant, D. (1995). Behind the Revolving Door: A New View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6(3): 362-377.
- Smith, C. E. (1991). *Courts and the Poor*. Chicago: Nelson-Hall.
- Steffensmeier, D., Kramer, J., & J. Ulmer. (1995). Age Differences in Sentencing. *Criminal Justice Quarterly*, 12(3): 583-602.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IL, U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STRACT

### Exploring Various Deep Underlying Perceptions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 Focus on the Q-Methodology

Jonghwan Eun and Kwangho Jung

In spite of long discussion, systemic research does not exist into the perception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Most of the research that does exist is made up of case studies or follows a legal-based approach. From the view of a legal-based approach,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carries a lot of problems.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would be a natural consequence from various non-legal perspectives.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 their analytical frame to only the legal perspective. Consequently, preferential treatment has been criticized in unfair terms. However, there have been no empirical studies from multiple non-legal perspectives. From another point of view,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has a social function. This study explores multiple perspectives on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nd studies the phenomenon using the Q-methodology. As a result, there were found to be five distinct perceptions concerning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The five perceptions are: ① the legal view, ② realism, ③ nepotism, ④ market-orientation view, ⑤ ethical view. This study finds the social-nepotism and market-orientation points of view as additional perspectives. The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zing the 'Law of Kim Youngnan' and legislation against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Keywords: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public ethics, Q-Methodology, problem definition】